

농식품부 장관, 함께하는 청년농 소통 간담회 참석

- 농지 전수조사 및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 의견 수렴
-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및 후계·청년농 육성협의체 등 소속 청년농 12명 대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화)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 및 2030 청년자문단 소속 청년농 12명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준비 중인 ‘2027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년농이 농촌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먼저, 농식품부는 현안이 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상황과 9월 21일에 발표한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하였다.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중대한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닌,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상화·양성화 기회가 부여되며, 청년농과 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 ①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②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③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④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 (야영장, 야적장 등) 또는 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

이어 논의한 2027년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 방향(안)에는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지원 신설,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 개편 등이 담겼다.

창업농 준비단계의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역량진단부터 기초이론 및

품목탐색교육, 현장실습까지 단계별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청년농의 금융위험 완화를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육성자금’을 패키지 지원하던 방식을 필요에 따라 각각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기간 도래 전인 청년농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작목 전환,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제안하는 금융컨설팅도 도입한다.

*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27년 신규사업, 90억원)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도 개편한다. 후계·청년농의 소득 불안정 완화를 위해 ‘본인 생산 농축산물 판매·가공·체험 등’으로 한정해 온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범위를 넓히고, 학업 병행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기간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청년농과 독립영농 부부 모두에게 사업 신청·지원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완·반영한 후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며, “그간 청년농 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청년농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청년농이 점점 더 농사짓기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카드뉴스

붙임 2 2027년 청년농 지원정책 개편(안)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044-201-1531)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044-201-1532)
	농지과	책임자	과 장	김기환 (044-201-1731)
		담당자	사무관	임창섭 (044-201-2731)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억울한 농업인이 없도록 계도와 안내 중심의 농지 정비를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8

추진 배경 및 목표

추진 배경

농지는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농업인의 일터,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하여 투기는 가려내고,
현실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자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농지제도 개편·생산성 향상·농업 세대전환에 활용합니다.

농지제도 개편

전수조사로 파악된 농지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농지제도 개편 및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농지정책 수립에 활용

-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맞는 임대차·휴경 허용사유 확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심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
-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 시설은 농업용 시설 등 양성화 조치
- 식량안보 목표 고려한 적정농지 확보·보전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2/8

추진 배경 및 목표

농지 생산성·활용도 제고

우량농지는 집적·규모화로 생산성 제고,
방치되던 농지는 농촌 활성화와 대체소득 확보에 활용

- 생산성 향상 건별로 매입·임대하던 농지은행 사업을 농지 DB를 토대로 집적·규모화, 공동영농 촉진
- 활용도 제고 맹자·저활용 농지의 대체소득 확보 방안(태양광 등) 검토

농업의 세대전환

농지은행 역할을 강화하여 고령농의 농지 현금화·유동화 지원,
청년농 농지 공급 등 원활한 농업 세대전환 추진

- 고령농 공공 매입, 정상화 조치에 따른 농지은행 임대위탁 확대, 농지연금·농지양도·농지매각 등 농지 현금화·유동화 방안 제공
- 청년·전업농 전수조사 후 농지은행에 위탁된 공적 활용 농지 풀(pool)을 토대로 청년층의 농업 진입과 전업농의 규모화에 필요한 농지 공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3/8

조치 방향

1. 투기 엄단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2. 대안 조치

그 외 위반 사항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정상화·양성화 기회 부여

투기 등 중대한 위반

법상 금지되는 중대한 불법전용

소유·임대차·휴경 관련 위반

전용 관련 위반

농지법에 따라
처분·원상회복 등 조치

농지은행에 임대/관리권 위탁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후
사후 전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4/8

조치 방향



중대한 위법 사항은 농지법 원칙대로 처분 등 조치

투기 유형

실제 농사지를 의사 없이 시세차익·개발이익·보상 등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하는 경우입니다.

-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 2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 3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헌득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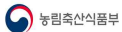
거짓·부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의한 투기 등으로 인정될 경우 처분명령 부과



중대한 불법 전용 유형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아영장·아적장 등) 또는 타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입니다.

원상회복 명령



5/8

조치 방향



관행 및 경미한 위법 사항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정상화·양성화 조치

*전수조사 사후조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처분 유예와 사후 전용 추인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합니다.

소유 관련

상속·이농 등으로
소유 상한(1ha)을
초과한 경우

▶ 농지은행 임대 위탁

전용 관련

지목 변경·사후 전용추인을 통해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휴경 관련

법상 허용 사유가 없는 휴경도
자진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
희망 시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해 처분 유예

▶ 맹자·경사지 등 자진복구가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필요 시 복구·임대 등을 검토

임대차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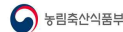
농촌 현장의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

▶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해
처분 유예 및 정상화

※ 교원 경력, 부모가 종여 후
계속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등

불법 전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사후 전용 추인하여 양성화

※ '26.5.18. 이전 완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대상



6/8

향후 추진 계획



법령 제·개정

전수조사 이후 국민·행정 부담을 줄이고

불법 전용 농지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농지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정(안) : '26.12월 특별조치법 제정안 마련 국회 의결 →
'27.1분기 시행 및 세부 지침 마련 → '27.2분기 농지법 개정안 발의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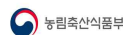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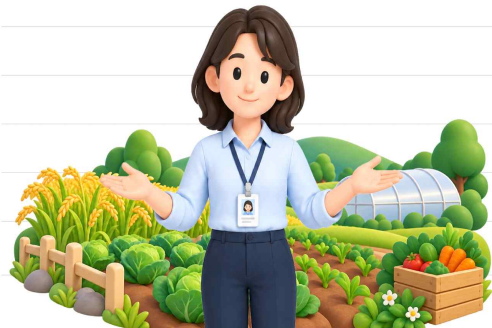
농지은행 역할 강화와 농지 활용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합니다.



7/8

농지 전수조사

투기는 근절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8/8

1.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신설(안)

- (현황) 영농예정자·비농업계 청년의 영농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실습 과정은 부족

* '25년 영농정착지원사업자 중 영농예정자·비농업계 비율: 83.2% / 77.5%(약 23~24백명)

- (개선안) 만 40세 미만의 영농 준비단계(경영체 미등록) 예비농업인 약 1,150명을 선정하여 품목별 기술 습득 및 맞춤형 창농 지원

- (지원내용) 역량진단 → 기초이론교육 및 품목탐색교육 → 현장실습 + 맞춤형 밀착지원을 통해 체계적 창농 준비 지원

- (역량진단) 예비농별로 영농·경영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 로드맵* 제시

* 예비농교육 + 농정원·농진청·지자체 등에서 제공 중인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제시

- (교육) 기초이론교육(농지·금융 등), 품목탐색교육(품목·축종 탐색), 파종부터 수확까지 소 작기 현장실습(최대 8개월) 등 진행

* 도별로 농업기술원, 국립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예비농 전용 교육과정 개설·운영

- (창농 밀착지원) 농지, 자금 등 맞춤형 정보 및 멘토링 등 제공

2.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지원 방향(안)

- (현황) 후계농육성자금으로 창농한 청년농은 초기 자본액(최대 5억)이 크나, 재무관리 등에 관한 지원 부재로 상환 여력 부족 우려 제기

- (개선안) 필요도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 개편하고, 경영·금융 교육 확대* 및 금융컨설팅 도입

* ('25) 필수교육 2h → ('26) 필수 6h + 선택 5h(150명) → ('27안) 필수 6h + 선택 5h(약500명)

- 영농정착지원-후계농육성자금은 '패키지 지원'에서 '필요시 신청·이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지·시설 매입보다 임차를 우선 지원

구분	AS-IS	TO-BE
지원 방식	· 영농정착지원사업자로 선정 시 후계농자금을 패키지 지원(동시 신청 불허)	·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자금 각각 신청·지원(동시 신청 허용)
후계농자금 지원 우선순위	· 최대 5억원 지원(우선순위 無)	· 최대 5억원 내 농지·시설 임대 우선 지원

- 상환기간 도래 전에 경영 상태, 상환능력 등을 진단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금융컨설팅을 도입, 청년농의 상환능력 향상 지원

3. 2027년 후계·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사업 개편(안)

1) 농외소득 창출 및 학업 이수 허용 확대

□ **(현황)** 전업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사업자 등록·학업이수 원칙적 금지, 영농과의 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만 예외적 허용

○ 청년농의 소득 불안정 완화를 위해서는 농외소득 창출 및 학업 이수에 관해 보다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

□ **(개선안)** 공익직불금 등 타 정책을 참고해 독립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외소득 창출과 학업 이수 허용 기준 완화

구분	금지	예외적 허용(현행)	예외적 허용(개선)
농외소득 창출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 본인 명의의 법인 설립 등기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 본인 생산 농축산물 판매·가공·체험사업에 한정 - 농업법인 설립 등기 등	- 본인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4,700만원 미만일 것
학업 이수	- 고등학생 - 대학생(휴학포함)	단기 교육과정(월 60시간 미만), 야간과정	- 월 60시간 미만 교육과정 (장·단기 고려 X) 주·야간 교육 모두 허용

2) 직계 존속의 농지·시설 임차 허용

□ **(현황)**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 시, 영농정착지원사업 미지원

○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의 조치이나, 부모 농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도 제3자의 농지 등을 임차하여 창농하는 비효율 발생

□ **(개선안)** 직계존속의 농지·시설 임차 시에도 독립영농 기반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되, 엄격한 관리*로 대리경작 등 부정행위 방지

* (실경작 확인) ① 농지대장 활용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 ② 본인 명의의 재해보험 가입증서 등

3) 독립 영농 중인 부부 청년농 대상 각각 사업 지원

□ **(현황)** 독립 영농 중인 부부 중 일방이 영농정착지원사업자로 먼저 선정된 경우, 다른 일방은 영농정착지원금·후계농자금 이용에 제한*

*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신청·지원 불가, 후계농자금은 가구당 한도(5억원) 내 신청·지원 가능
- 예외적으로 혼인신고 이전 부부 각각이 영농정착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경우만 지원

□ **(개선안)** 부부가 독립 영농 중인 경우, 각각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육성자금 신청·지원 가능하도록 개선